■ 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제주도·세종시 우선 시행

"필요성 공감" vs "활성화 쉽지 않을 것"

시행 대상은 프랜차이즈 매장… 제주 400여개 추산

"다회용 컵도 결국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바꾼다고 플라스틱 줄이기가 될까요?"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지역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실제 소비자들의 분위기는 다소 회의적이었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 방안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12월 2일부터로 하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제주도는 지난 26일 '1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호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종이컵,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입하면 음료 가격에 더해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보증금으로 300원을 책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소비자 최대 지불의사 조사 결과'였던 341원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개당 6.99원의 라벨비와 3원의 카드 수수료, 1회용 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 등을 지원하며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당장 12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은 제주도 내에 400여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매장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한다.

28일 제주시 도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40대 A씨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선의 방안인지는 의문"이라며 "다회용 컵 역시 플라스틱 재질인데 또 다른 플라스틱 컵을 위한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고 텀블러 사용 활성화 정책이 더 우선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시민 20대 B씨는 "1회용 컵에 구매한 경우 매번 반납하기 번거로워 모아서 해야지 하다가 잊을 때가 많다"며 "활성화하려면 보증금이 300원보다는 더 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커피 컵은 50원, 패스트푸드 음료 컵은 100원의 보증금을 적용해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했지만 회수율은 37%에 그친 바 있다.

또 다른 카페에서 만난 30대 C씨는 "관광객이 많은 제주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냐"며 "여행하느라 바쁜 와중에 반납이 원활할 지도 우려되고 제주가 혼란의 시험장이 될 텐데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하려면 서울에서부터 시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녹지병원 허가조건 취소 소송 첫 항소심

'내국인 진료 제한' 적법성 공방

전례 없는 '녹지병원(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경훈)는 28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면서 촉발됐다.

당시 녹지 측은 제주특별법과 의료법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며 원 전 지사의 조건부 개설 허가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특별법에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됐을 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도 "제주특별법에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며 "심지어 이 사건 허가조건의 내용은 제주특별법 등에서 정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녹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지난 6월 녹지병원의 개설허가를 '2차' 취소한 상황에서 '내국인 진료제한'을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녹지 측은 "1심 당시에도 제주도가 개설허가 취소를 하는 바람에 소송이 수년간 이어졌다"며 "항소심에서는 개설허가가 아닌 내국인 진료제한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 측은 "1차 취소와 2차 취소는 사유가 다르다"면서 "특히 녹지 측은 제3자에게 병원 건물 등을 매각했으며, 이 제3자 역시 영리병원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며 이번 소송에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11월 2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 계획이다. 송은범기자

"탄저균 우편물 의심"

군·소방 등 출동 소동

'탄저균 우편물'로 의심되는 정체불명의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과 소방당국 등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8일 제주경찰청과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3분쯤 제주동부경찰서 함덕파출소로 50대 남성 A씨가 찾아와 해외에서 받은 우편물이 '탄저균 우편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의 요청으로 해병대 9여단과 제주소방 생화학 차량 등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장에서 실시한 1·2차 시료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 사진

한편 우편물 안에는 영어로 적힌 편지와 스티커가 첨부돼 있었으며 확인 결과 백색 가루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영기자

숭어들의 식사시간 28일 제주시 구좌읍 바다에서 숭어떼들이 수면 가까이 올라와 먹이를 먹고 있다. 이상국기자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광주고법 징역 4년 선고
위험운전치사죄 인정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됐다.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가 인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를 여행 중이던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연인 B씨와 렌트한 오픈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 등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B씨가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 이듬해 숨졌다.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에 대해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피해 결과가 중할뿐더러 유가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4·3 일반재판 직권재심 희생자 163명"

도, 수형인 1차조사 결과 제주지검에 전달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대상자 확인 작업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조사로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일반재판 수형인)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163명을 특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그 해에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된 사람들이다. 제주도는 이 중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의 심의 자료 등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전달했다.

제주4·3 일반재판 직권재심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23일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제주도가 일반재판 수형인 중 희생자를 확인하고 나선 것도 직권재심을 위한 사전 단계다. 현행 4·3사건법에는 특별재심 대상이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재판이 이어졌던 만큼 제주도는 조사 연도를 넓히며 대상자 확인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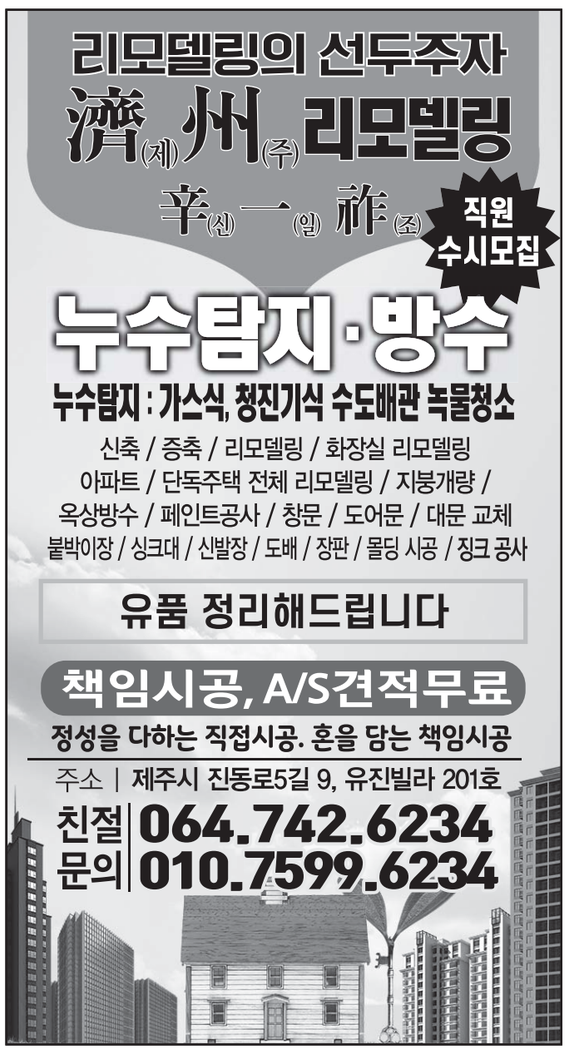
도 관계자는 "아직 희생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엔 희생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